

신구조문대비표
「무역촉진단 파견사업」 관리지침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무역촉진단”이라 함은 마케팅능력이 취약하고 수출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<u>수출중소기업</u>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단체전시회, 시장개척단, 수출컨소시엄 등을 말한다.</p> <p>2. ~ 6. (생 략)</p> <p>7. “대□중소기업 동반진출”이라 함은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----- <u>중소기업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삭 제)</p>	<p>문구 수정 및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에서 분리된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부분 삭제</p>
<p>제4조(관리기관 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이 지침에 의한 관리기관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. 단, 대□중소기업 동반진출은 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한 대□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관리기관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 지침에 의한 관리기관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.</p>	<p>무역촉진단 파견 사업에서 분리된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부분 삭제</p>
<p>제7조(신청접수) ① 주관단체는 참가신청서(별표 제5호 내지 제8호 서식)를 갖추어 관리기관에 신청(해외전시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병행)하고 관리기관은 접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신청접수) ① ----- ----- (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)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별지번호 조정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8조(평가) ① 관리기관은 주관단체가 신청한 파견계획서에 대해 평가표(별표 제1호 내지 <u>제4호</u>)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주관단체는 비회원사 및 수출초기기업, 지방중소기업, 녹색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은 사업평가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평가) ① ----- <u>제3호</u> -----</p> <p>② ----- 내수기업 및 수출초기기업, 비회원사, -----</p>	<p>별표번호 조정 및 문구 명확화</p>
<p>제9조(선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 시장 품목, <u>미개척시장 개척,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</u>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별도로 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9조(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신흥시장 개척, 정책적 목적의 사업 추진</u>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별도배정사업의 명료화 및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에서 분리된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부분 삭제</p>
<p>제10조(이의신청) ① (생 략)</p> <p>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주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<u>중소기업청</u> 및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평가결과가 사업선정 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10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중소기업청</u> -----</p>	<p>문구 수정</p>
<p>제11조(지원기준) ① 선정된 주관단체에게 별표 제9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되,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시 <u>10% 범위 내(예산범위 내에서 조정)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연말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년도 종료시점에서 일괄 지원한다.</u></p>	<p>제11조(지원기준) ① ----- <u>제4호</u> -----</p> <p>----- <u>20% 범위내(예산범위 내에서 조정)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</u> -----</p>	<p>매출액 10억미만의 영세기업 지원 확대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② 사업참가 기업에 대해서 전시회의 경우 동일 전시회 당 최대 5회, 시장개척단은 동일 지역 당 최대 5회로 제한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동일 기업이 수출컨소시엄에 참가한 경우에는 참가횟수에서 제외</p> <p>3.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정 전시회나 업종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③ 수출초기기업, 예비창업자, 녹색□신성장산업, 고용창출 100대기업, 서비스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항공료□체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지원회수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토록 한다.</p>	<p>② - - - - -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, 동일전시회, 동일지역 시장개척단□수출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은 누계 5회 이내로 제한한다. 다만, - - - - - 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삭 제)</p> <p>2.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정 전시회나 업종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③ <u>내수기업, 수출초보기업</u>, - - - - - .</p>	<p>동일 사업내 중복 지원 배제 및 문구 수정</p>
<p>제12조(파견계획 변경) ① (생 략)</p> <p>② 관리기관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주관단체가 제출한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평가한 후 파견목적 달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총 지원금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12조(파견계획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.</p> <p>- - - - - <u>사업별 지원예산의 50%</u> - - - - - .</p> <p><u>중소기업청장의</u> - - - - - 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변경 승인 한도 조정</p>
<p>제13조(참가업체 모집) ① (생 략)</p> <p>② 주관단체는 참가기업 선정기준(표준평가안 변경 시 관리기관 승인)에 따라 신청기업을 평가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참가기업에 공개하고, 관리기관에 평가표와 근거 및</p>	<p>제13조(참가업체 모집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.</p>	<p>별지번호 조정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별표 제21호의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'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별지 제4호 - - - - 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4조(해외전시회 구성) ①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구성하되, <u>부득이한 경우</u>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전시 장치부스 입찰은 <u>해외전시포털을 통해 추진</u>하되 입찰관련 절차, 제출서류,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<u>별표 제20호</u>와 같다.</p>	<p>제14조(해외전시회 구성) ① - - - - -</p> <p><u>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</u> 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전시 장치부스는 입찰 진행 시 해외전시포털을 통해 공고하고,</u> - - - - - <u>별표 제5호</u> - - - - - .</p>	<p>문구 수정 및 별표번호 조정</p>
<p>제16조(수출컨소시엄 구성) ① 30개사 이내의 참여기업으로 <u>구성하고, 참가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사업수행 단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, 최소 두단계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16조(수출컨소시엄 구성) ① - - - - -</p> <p><u>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참여기업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참가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사업수행 단계(사전준비단계, 현지활동단계, 사후관리단계)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. 다만, 3단계 수행 과정에서 최소 두 단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내용 구체화</p>
<p>제17조(대중소기업 동반진출) ① ~ ② (생 략)</p>	<p>제17조(대중소기업 동반진출) ① ~ ② (삭 제)</p>	<p>무역촉진단 파견 사업에서 분리된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 조문 삭제</p>
<p>제18조(현지활동) ① (생 략)</p>	<p>제17조(현지활동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문 번호 수정 및 별표, 별지번호 조정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② 주관단체는 사업추진 시 표준운용절차(별표 제14호, 제15호)를 준수하여 파견 준비 및 현지 활동을 함으로써 성과제고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(별표 제6호, 제7호) ----- ----- .</p>	
<p>제18조의1(사업관리) (생략)</p>	<p>제18조(사업관리)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문 번호 수정</p>
<p>제19조(보조금) 사업추진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게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 기준은 <u>별표 제9호</u>와 같다.</p>	<p>제19조(보조금) ----- ----- <u>별표 제4호</u> ----- .</p>	<p>별표번호 조정</p>
<p>제20조(보조금 신청) 주관단체는 사업선정 이후, 보조금 교부 신청(별표 제10호)을 할 수 있으며,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별 정부보조금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.</p>	<p>제20조(보조금 신청) ----- ----- <u>별지 제5호</u> ----- ----- .</p>	<p>별지번호 조정</p>
<p>제21조(교부금 교부) ① 관리기관은 <u>최초 지원금액의 95% 이내에서 개산급으로 사전에 교부</u>하되, 주관단체 요청 시 <u>보조금 전액을 사전에 교부</u>할 수 있다. <u>다만,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참가기업이 해외전시포털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기업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관리기관 및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<u>계정을 설정</u>하여 타 사업과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(교부금 교부) ① ----- <u>주관단체 요청시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에 한하여 예산의 95% 이내로 개산급을 ----- 단, 해외전시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분은 제외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계좌를 사용하여 타 사업과는 명확히 구분하고,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.</u></p>	<p>의미 명료화를 위한 문구 수정</p>
<p>제22조(보조금 사용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개척단의 정부보조금은 KOTRA 시장개척단 단가기준을</p>	<p>제22조(보조금 사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	<p>의미 명료화를 위한 문구 수정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준용하되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④ 연속수행 수출컨소시엄의 경우, 동일국가 파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사전준비단계 사업을 인정하지 않으며, 사후 관리단계 사업이 전체 소요예산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	<p>----- 기준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④ ----- ----- <u>타겟시장조사 비용</u> ----- ----- .</p>	
<p>제23조(보조금의 정산) ① 주관단체는 귀국 후 60일 이내(마지막 달은 30일 이내)에 보조금 사용실적과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등은 정산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개척단의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실적 보고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1. 환전 영수증, 송금 영수증 2. 통역원 등 사용 시에는 해당인력 신분증 사본, 연락처 등 관련 근거자료 3. 홍보물, 초청장, 신문광고 자료 각 1부 4. 제반 영수증은 원본을 첨부하되, 부득이한 경우 복사본 제출 가능</p> <p>②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보조금에 대한 “은행이자”는 반납하되, 송금수수료가 은행이자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납분에서 제외</p>	<p>제23조(보조금의 정산) ① ----- 사업종료(귀국 시점) 후 60일 이내(사업기간 마지막달 종료사업은 30일)에 ----- -----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필요 증빙자료 일체 2. 적용환율 및 실집행액 확인이 가능한 환전, 송금 영수증 3. 홍보물품, 신문광고, 초청장 실물 또는 원본 각 1부 4. 제반 영수증은 원본을 첨부하되, 부득이한 경우 복사본(원본대조필 날인) 제출 가능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“예금이자” -----, 반납을 위한 ----- -----</p>	<p>의미 명료화를 위한 문구 수정</p>
<p>제25조(파견결과 보고) ① 주관단체는 귀국 후 60일 이내에 파견결과 보고서(별표 제11호 내지 제13호)를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참가기업별 실적을 해외전시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년도 마지막 달(통상 2월)에 파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파견결과 보고) ① ----- 사업종료(귀국 시점) 후 60일 이내(사업기간 마지막달 종료사업은 30일)에 파견결과 보고서(별지 제6호 내지 제8호)를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참가기업별 실적을 해외전시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의 미명료화를 위한 내용 수정 및 항 신설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② <u>주관단체는 사업종료 이후 매 6개월 마다 1년간(파견종료 후 2번) 참가기업이 최종 수출실적을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에 입력하도록 안내하는 등 참가기업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② <u>사업참가 중소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매 6개월 마다 1년간(파견종료 후 2번) 참가기업이 최종 수출실적을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주관단체는 참가기업이 제2항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참가기업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제26조(파견결과 평가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사업 참가기업은 귀국 후 60일 이내에 만족도조사 등의 정성적 평가를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당해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계약액 등 실적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외전시포털에 <u>수시</u> 입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	<p>제26조(파견결과 평가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사업참가 중소기업은 참가 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 해외 전시포털을 통해 만족도조사 등의 정성적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, - - - - - 수시로 - - - - -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의미 명료화를 위한 내용 수정</p>
<p>제27조(벌칙조항) ① <u>주관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<u>주관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실태조사(현장확인 포함)를 거부,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</u></p> <p>4. ~ 5. (생 략)</p>	<p>제27조(벌칙조항) ① - - - -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납하고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.</u></p> <p>1. <u>정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</u></p> <p>2. <u>정부보조금을 지원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</u></p> <p>3. <u>타 정부(지자체 포함) 보조금을 중복 신청 수령한 경우</u></p> <p>② - - - - - <u>향후 2년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 - - - - <u>자료제출, 현장확인 등</u> - - - - 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한 민□형사상 책임 소재 명시 및 사안에 따라 벌칙조항 강□완화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사업선정시 사업참여를 2회 이내로 제한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출을 6개월 이상 늦추는 경우</p> <p><신 설></p>	<p>③ 주관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사업선정시 사업참여를 1회 이내로 제한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사업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출을 3개월 -----</p> <p>3. 별지 제10호의 참가업체 평가 기준(표준안) 변경 시 관리 기관의 사전승인절차 미이행 등 관리지침상 절차 위반 시</p>	
<p>※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<u>고시</u>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※ 부 칙 제1조(시행일) ----- <u>공고</u> -----.</p>	<p>문구 수정</p>